

군산시 공고 제2014-1730호

공 고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의 민간위탁 후 재위탁·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개정 필요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 필요 명시
-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 필요 규정 명문화
 -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는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단순 집행적·행정관리사무 민간위탁 기준 완화
 -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 위의 사무는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454-2253, FAX 454-2228)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에 다음과 같이 3호 및 4호를 신설 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 ----- ----- -----.
제2조 1. · 2. (생략) <신 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군산시 공고 제2014-174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 법 예 고

□ 개정이유

- 징계등 의결시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함
-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정하려고 함

□ 주요내용

-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안 제2조, 제8조)
-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안 제3조)
-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징계의 감경 제한 사유 추가(안 제5조)
- 용어 등 정리(안 제5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총무과
(전화:454-2254, FAX:454-2228)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4-2254)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적용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1”을 각각 “별표1부터 별표6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희롱”을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군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공적</u> , <u>뉘우치는 정도</u> , 그 밖에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2와 별표6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 <u>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

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단서
신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
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
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
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

1. -----
-.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적용

2. -----

별표1부터 별표6까지 --

3. -----
별표1부터 별표6까지 --

제5조(징계의 감경) ① -----

----- 비위, 「도로교통법」

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써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

1. (현행과 같음)

2.-----

-----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

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4. (생략)

② (생략)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
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3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
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
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
음)

② -----

----- 관련도,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
무 처리의 적극성, -----
-----.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4-124호

군산시 금연구역 지정고시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군 산 시 장

1. 지정취지 : 많은 시민이 모이고 이용하는 월명공원 및 은파호수공원 학교절대정화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5년 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연번	지정장소	범 위	면 적	위 치	비 고
1	월명공원	전지역	2,587,400㎡	월명동, 나운동, 소룡동, 문화동 일원	
2	은파호수공원	전지역	2,505,795㎡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유치원·초·중·고교 116개소	학교절대 정화구역 50m이내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유치원 25 초교 59 중교 19 고교 12 특수학교 1

※ 향후 학교 등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4.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대, 전국 시·군·구 등
5. 계도기간 : 2015. 1. 1 ~ 6.30(고시 후 6개월간)일까지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부과
 - 부과시기 : 2015년 7월 1일부터
 - 부과금액 : 5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계(460-3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군산시 금연구역 고시 현황(118개소)

연번	지정고시지역	구분	대상지역	비고
1	월명공원	도시공원	공원 전체	
2	은파호수공원	관광지	공원 전체	
	학교 절대정화구역		116개소	
1	군산용문초	공립	군산시 미룡로 32-8	학교출입문 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2	군산서해초	공립	군산시 의료원로 162	
3	군산진포초	공립	군산시 나운안길 54	
4	군산아리울초	공립	군산시 수송동로 90	
5	군산소룡초	공립	군산시 설림길 55	
6	군산푸른솔초	공립	군산시 축동로20	
7	군산지곡초	공립	군산시 신지길26	
8	군산신흥초	공립	군산시 백토로 129	
9	군산미장초	공립	군산시미장안길 14	
10	군산경포초	공립	군산시백릉로75	
11	군산수송초	공립	군산시 월명로312	
12	전주교대부설초	국립	군산시팔마로 185	
13	군산신평초	공립	군산시하나운3길7	
14	군산산북초	공립	군산시원산북2길 29	
15	군산구암초	공립	군산시경암3길 64-1	
16	군산동초	공립	군산시 번영로181	
17	군산나운초	공립	군산시신설로50	
18	군산흥남초	공립	군산시 서흥안2길 20	
19	군산문화초	공립	군산시 문화안길 51	
20	군산미성초	공립	군산시 철성2길 27	
21	군산금광초	공립	군산시 대학로 100	
22	군산풍문초	공립	군산시 풍마길 22	
23	군산중앙초	공립	군산시 중앙로 91	
24	당북초	공립	군산시 옥산면 백석로 40	
25	대야초	공립	군산시 대야관통로141-13	
26	군산미룡초	공립	군산시 대학로 498-10	
27	군산초	공립	군산시 중앙로170	
28	군산남초	공립	군산시 삼학7길4	
29	회현초	공립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39	
30	군산월명초	공립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23	
31	옥봉초	공립	군산시 옥서면 옥봉초교길 29	
32	문창초	공립	군산시 공항로 394	
33	군산서초	공립	군산시 중앙로 230	
34	옥구초	공립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50	
35	개정초	공립	군산시 개정면 동정1길5	
36	나포초	공립	군산시 나포면 교동1길23	
37	성산초	공립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	
38	발산초	공립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43	
39	옥산초	공립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40	
40	술산초	공립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26-13	
41	서수초	공립	군산시 향쟁로 199	
42	임피초	공립	군산시 임피면 동헌길 38	
43	해성초	공립	군산시 산북동 옥성남길 21	
44	마룡초	공립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123	
45	창오초	공립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46	금암초	공립	군산시 수면항 등서로 351-8	
47	오봉초	공립	군산시 회현면 오봉길 55	
48	대야남초	공립	군산시 대야면 남군산로 116	
49	군산내흥초	공립	군산시 사옥2길 33-18	
50	오식도초	공립	군산시 요죽5길 42	
51	비안도초	공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1길 7	
52	무녀도초	공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2길 33	
53	어청도초	공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5-7	
54	선유도초	공립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89-1	
55	개야도초	공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189-10	
56	신시도초	공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18-5	
57	대야초광산분교	공립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1421	
58	해성초내초분교	공립	군산시 내초안길 21-12	
59	신시도초야미분교	공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18-5	
전 체 합 계				59개교
60	군산중학교	공립	군산시 군중길 18	
61	군산남중학교	공립	군산시 대학로222	
62	군산서흥중학교	공립	군산시 축동로 129	
63	군산동원중학교	공립	군산시 의료원로 146	
64	군산금강중학교	공립	군산시 용문초교길 46	
65	군산진포중학교	공립	군산시 진포3길66	
66	군산산북중학교	공립	군산시 동아로 109	
67	군산월명중학교	공립	군산시 설림5길 90	
68	군산제일중학교	사립	군산시 경기장로 142	
69	군산중앙중학교	사립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70	군산동산중학교	공립	군산시 구영신창길 60-6	
71	군산영광중학교	사립	군산시 중앙로2가 135	
72	회현중학교	공립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26	
73	옥구중학교	공립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0	
74	군산자양중학교	공립	군산시 옥구읍 우치산3길 40	
75	군산대성중학교	사립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44-6	
76	나포중학교	공립	군산시 나포면 등동 1길 6-5	
77	임피중학교	공립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38	
78	선유도중학교	공립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89-1	
전 체 합 계				19개교
79	군산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팔마로177	
80	군산남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60	
81	군산동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달여길 50	
82	군산제일고등학교	사립	군산시 경기장로 142	
83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해망로 525	
84	군산중앙고등학교	사립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85	군산여자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월명1길 16	
86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사립	군산시 축동2길 27	
87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사립	군산시 둔배미길 21	
88	군산상업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석치1길 17	
89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신지길 42 - 8	
90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립	군산시 군중길 28	
전 체 합 계				12개교

91	군산명화학교	공립(특수)	군산시 상나운1길 37	
전 체 합 계				1개교
92	푸른숲유치원	사립	군산시 신설1길 53	
93	초록빛유치원	사립	군산시 나운5길 63-6	
94	세움아이유치원	사립	군산시 용둔길 10	
95	군산유치원	사립	군산시 신평길 16-13	
96	숲속유치원	사립	군산시 계산2길 10-7	
97	동아유치원	사립	군산시 동아로 160	
98	서해대학부속유치원	사립	군산시 서해대길 6	
99	군산셋별유치원	사립	군산시 백룡4길 43	
100	아이세상유치원	사립	군산시 하나운로 43	
101	일곱빛깔무지개유치원	사립	군산시 진포2길 12	
102	파란나무유치원	사립	군산시 상지곡안2길 30	
103	오렌지동화나라유치원	사립	군산시 상신5길 6-3	
104	새나래유치원	사립	군산시 하신2길 19-5	
105	해나라유치원	사립	군산시 한밭1길 22	
106	즐거운유치원	사립	군산시 축동로 90	
107	호원대학부속유치원	사립	군산시 월명2길 35	
108	반야유치원	사립	군산시 동산길 25	
109	해성유치원	사립	군산시 구영6길 55	
110	성심유치원	사립	군산시 둔배미길 24	
111	원광유치원	사립	군산시 조촌안1길 32	
112	개복유치원	사립	군산시 중앙로 119	
113	이른아침유치원	사립	군산시 부골2길 13-2	
114	새싹유치원	사립	군산시 신촌남길 24	
115	바다유치원	공립	군산시 서흥안2길 20	
116	우리별유치원	공립	군산시 경암5길 77-20	
전 체 합 계				25개교

군산시 고시 제2014-12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1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32	주차장	금동 2-3일 원	2,037	감)2,037	—	2003.06. 24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4-12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1월 28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35	초등학교	산북동 801-3일 원	12,000	감)12,000	—	1996.06. 01	
폐지	13	중학교	산북동 956-5일 원	11,730	감)11,730	—	1996.06. 01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4 - 127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27.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가. 지역주택조합

1)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2) 대표자 : 전 윤 권

3) 주 소 : 군산시 수송동 852-2번지, 청담빌딩 4층

나. 공동사업주체

1) 회사명칭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2) 대 표 자 : 김 위 철

3)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외 34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20,523.00㎡(**변경**)

다. 건축면적 : 3,311.90㎡

라. 연 면 적 : 65,840.33㎡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24~26층, 449세대

- 전용 84.9838㎡ 403세대

- 전용 84.9848㎡ 46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68,193,293천원

4.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대지면적	20,480.00㎡	20,523.00㎡	증 43.0㎡	
건 폐 율	16.17%	16.14%	증 0.03%	
용 적 율	245.42%	244.90%	증 0.52%	
진 입 로	중로 2-138호선 (B=15M, L=192M)	중로 1-19호선 (B=20M, L=160M)		

5. 변경승인일 : 2014년 11월 25일

6.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 : 붙임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7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일원	25,361	증) 237	25,598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37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일원	○면적변경 - 25,361㎡ → 25,598㎡ (증 237㎡)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및 지적분할에 의한 확정면적 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9	20	보조 간선	1,050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1	19	20	보조 간선	1,050 (160)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폐지	중로	2	138	15	국지 도로	192	중로1-1 9	중로2-2 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제척 에 따른 환원
신설	소로	1	261	10	국지 도로	192	중로1-1 9	중로2-2 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제척 에 따른 환원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 1-19	중로 1-19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 (L=160m, B=18.5m~19.5m) 폭원 20m로 확장	• 기존 폭원 20m 미확보 구간에 대한 폭원 20m확보	
중로 2-138	-	• 노선폐지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폭원확장)을 해제	
-	소로 1-261	• 노선신설 - B=10m, L=192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부분)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폭원확장)을 해제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5,361	증)237	25,598	1-①	군산시 옥산면 당북 리 917번지 일원	20,480	증)43	20,523	공동주택용지
					1-②	군산시 옥산면 당북 리 935-1번지 일원	4,881	증)194	5,075	도로용지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20%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26층 이하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적용

①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지역에서의 차량출입은 불허함
도로확폭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확폭 - 지정 소로1-266호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L=154m) 확폭 : B= 중 2m - 지정 중로1-19호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L=160m) 확폭 : B= 중 0.5m~1.5m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612	8	국지 도로	366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12	8	국지 도로	371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제척에 따른 환원
기정	소로	2	619	8	국지 도로	192	중로1-19	중로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19	8	국지 도로	191	중로1-19	중로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노선축소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620	8	국지 도로	366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20	8	국지 도로	371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제척에 따른 환원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612	소로 2-612	- 노선연장(L=366m→371m, 증 5m) - 가각변경	기정 중로2-138호선 폐지 및 소로1-261호선 신설(환원)에 의한 노선연장 및 가각변경	
소로 2-619	소로 2-619	- 노선축소(L=192m→191m, 감 1m) - 가각변경	기정 중로1-19호선 폭원 20m 미확보구간에 대한 폭원 20m 확보에 의한 노선축소 및 가각변경	
소로 2-620	소로 2-620	- 노선연장(L=366m→371m, 증 5m) - 가각변경	기정 중로2-138호선 폐지 및 소로1-261호선 신설(환원)에 의한 노선연장 및 가각변경	

군산시 공고 제 2014 - 1672 호**＝ 나운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2009-172호(2009.06.05)로 결정 고시되고, 전라북도 고시 제2014 - 240호(2014.09.19)로 고시된 군산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청취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군 산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4. 11. 20. ~ 2014. 12. 08.

나. 공람공고 : 군산시보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가) 군산시청(2층) 건축과 (☎ 063-454-3712)

나)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63-461-2563)

라.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2층) 건축과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과)

마. 공람내용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

라.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 3) 시행면적 : 37,173.6㎡
- 4) 시 행 자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문창우)
-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 6) 건축계획 : 공동주택 10개동 993세대(지하2/지상16~26층) 및 부대복리시설
- 7) 기반시설 : 3,572.60㎡(도로 3,123.80㎡ / 경찰관서(파출소) 448.80㎡)

바. 관계서류 및 관련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사. 기타 공지사항

- 1)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관계서류 및 도서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2)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는 군산시 건축과 및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군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 의견서

(접수번호 :)

☐ 대상사업

건명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사업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 공람기간 : 2014. 11. 20(목) ~ 2014. 12. 08.(월)

☐ 의견 제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소유물건	

☐ 제출의견

2014.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4 - 16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4. 11. 21.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월명동 25-3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0, 제4소공원)
 - 2) 명 칭 : 군산여고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 로	중로3-50	12	106	1,328	12	106	1,328	12	73	904	군산고시 2009-118호 (09.12.31)
소공원	제4공원			658			658			658	
소 계			106	1,986		106	1,986		73	1,562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0. 4. ~ 2013. 4.
변경 : 2010. 4. ~ 2016. 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제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당초)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군산시 월명동	23-1	대	15,290	2	주식회사 다원건설	군산시 월명동 7-4				
2	군산시 월명동	38-22	도	5,008	5	국 (국세청)					
3	군산시 월명동	25-10	도	72	13	군산시					
4	군산시 월명동	25-3	대	406	406	고석근	군산시 월명동 25-3	최순단	군산시 중앙로 3가194-3	전세권	
5	군산시 월명동	25-4	대	46	46	국 (재무부)					
6	군산시 월명동	25-7	대	269	269	서봉익	군산시 월명동 25-7				
7	군산시 월명동	25-8	대	56	56	문일동	군산시 시흥동 26-112				
8	군산시 월명동	25-9	대	116	116	전경자	군산시 월명동 25-3				
9	군산시 월명동	38-53	도	1,667	861	국 (건설부)					
10	군산시 월명동	26-7	대	136	2	홍명숙	군산시 월명동 26-7				
11	군산시 월명동	26-8	대	136	56	조주환	군산시 사정동 347-3	동진강낙농 축산업협동 조합	김제시 검산동 820-4	근저당	
12	군산시 월명동	26-9	대	36	30	설인순	군산시 소룡동 1024-27	대야새마을 금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726-30	근저당	
13	군산시 월명동	26-10	대	380	71	노황철	군산시 구암동65 현대아파트111동 202호				
14	군산시 월명동	27-10	도	33	2	국 (재무부)					
15	군산시 월명동	27-9	도	3	1	국 (건설부)					
16	군산시 월명동	27-3	대	56	2	채점석	군산시 월명동 27-3	채봉석	군산시서수면 마룡리406-1	가압류	
								장선미	군산시소룡동 신도시아파트10 1동215호	가압류	
								김성배	군산시 나운동 738-1	근저당	
17	군산시 월명동	27-2	대	195	5	이길배	군산시 월명동27-2				
18	군산시 월명동	27-1	대	126	10	김봉현	군산시 월명동 27-1	군산시수산 업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동828-1	근저당	
19	군산시 월명동	25-5	대	33	33	국 (재무부)					
계				8,774	1,986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군산시 월명동	23-1	대	15,290	2	주식회사 다원건설	군산시 월명동 7-4				
2	군산시 월명동	38-22	도	5,008	5	국 (국세청)					
3	군산시 월명동	25-10	도	72	13	군산시					
4	군산시 월명동	25-3	대	406	406	고석근	군산시 월명동 25-3	최순단	군산시 중앙로 3가194-3	전세권	
5	군산시 월명동	25-4	대	520	520	군산시					
6	군산시 월명동	38-53	도	1,667	616	국 (건설부)					
				22,963	1,562						

○ 사용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당초)

연 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또는 면적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25-3	주택	블록,함석	108.7㎡	주거	고 석 근	전북 군산시 월명동25-3					
		창고	블록,슬래브	2.9 ㎡	창고							
		까데기	강관,함석	23.1 ㎡	창고							
		채양	콘크리트	0.6 ㎡								
		담장	블록	31.0 ㎡								
		바닥콘크리트		22.0 ㎡								
		철계단	3.0x0.5	1 식								
		소나무	40년	1 주								
		향나무	40년	2 주								
		후박	40년	1 주								
		장미	5년	1 주								
		철쭉	3년	12 주								
		철쭉	10년	1 주								
		감나무	3년	2 주								
		사철나무	5년	5 주								
		석류	3년	1 주								
		회향목	3년	1 주								
		포도나무	3년	1 주								
		무화과나무	15년	1 주								
		덩쿨나무	5년	1 주								
		자두나무	5년	1 주								
		대추나무	3년	1 주								
2	25-3	상가	블록,조립식	264.9 ㎡	월명홀 마트	고석근	전북 군산시 월명동25-3	전세권	군산시 중앙로3가194 -3	최순단		
		채 양	천막	4.4 ㎡								
		콘크리트		0.5 ㎡								
3	25-7	주택	블록,함석	125.5 ㎡	주거	서봉익	군산시 월명동 25-7					
		상가	조립식판넬	33.6 ㎡	야채시 과일동			임차인		정운남 (야채시과 일동)		
		상가	조립식판넬	37.8 ㎡	월명세 탁소			임차인		최재규(월 명세탁소)		

○ 사용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당초)

연 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또는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자		
									주소	성명	
3	25-7	화장실	조립식판넬	4.2 m ²							
		보일러실	조립식판넬	8.0 m ²							
		채 양	캐노피	3.6 m ²							
		마당콘크리트55.0 m ²									
		담장	블록	3.6 m							
		철계단	3.5x850	1 식							
		대문		1 식							
		화단		1 식							
		뽕나무	5년	1 주							
		감나무	7년	1 주							
		동백나무	3년	1 주							
		석류나무	3년	2 주							
		철쭉	3년	2 주							
		남천3년	3년	1 주							
4	25-8	주택	블럭,기와	68.4 m ²	주거	문일동	군산시 월명동25-8	임차인		김용준	
		화장실	블록,슬라브	3.4 m ²							
		계단	1.5x0.7	1 식							
		계단	3.2x0.7	1 식							
		채양	플라스틱	5.9 m ²							
		마당콘크리트	6.0x2.7	16.2 m ²							
		담장		7.3 m							
		대문	목재	1 식							
5	25-9	주택	함석,블록	80.3 m ²	주거	전경자	군산시 월명동 25-3				
		상가	블록,슬라브	30.4 m ²	빈상가						
		창고	슬레이트	24.0 m ²							
		계단	4.0x0.8	3.2 m ²							
		계단	3.1x0.8	2.5 m ²							

연번	지번	물건의 류	구조및규격	수량또는 면적	실제 이용상 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5	25-9	담장		3.1 m							
		대문	철문	1 식							
6	26-8	주택	함석,블록	105.0 m [㎡]	주거	조주환	군산시 사정동 347-3	임차인	군산시 월명동 26-8	문은순	
		상가	블록,샤시	21.8 m [㎡]	빈 상가			근저당	김제시 검산동 820-4	동진강낙농축 산업협동조합	
		창고	슬레이트	22.0 m [㎡]							
		문주		1 식							
		대문		1 식							
7	26-9	주택	블록,슬레이 트	47.0 m [㎡]	주거 도설양	설인순	군산시 소룡동 1024-27	근저당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26-30	대야새마을금 고	
		화장실	블럭,슬라브	7.0 m [㎡]							
8	26-1 0	대문		1 식		노황철	군산시 구암동 65현대아파트 111동202호				
		문주		1 식							
		향나무	30년	5 주							
		철쭉	10년	3 주							
		철쭉	5년	2 주							
		주목	10년	1 주							
		꽃나무	30년	1 주							
		조경석		5.0 m							
		잔디		9.0 m [㎡]							

○ 사용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변경)

연 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또는 면적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25-3	주택	블록,함석	108.7㎡	주거	고 석 근	전북 군산시 월명동25-3					
		창고	블록,슬래브	2.9 ㎡	창고							
		까데기	강관,함석	23.1 ㎡	창고							
		채양	콘크리트	0.6 ㎡								
		담장	블록	31.0 ㎡								
		바닥콘크리트		22.0 ㎡								
		철계단	3.0x0.5	1 식								
		소나무	40년	1 주								
		향나무	40년	2 주								
		후박	40년	1 주								
		장미	5년	1 주								
		철쭉	3년	12 주								
		철쭉	10년	1 주								
		감나무	3년	2 주								
		사철나무	5년	5 주								
		석류	3년	1 주								
		회향목	3년	1 주								
		포도나무	3년	1 주								
		무화과나무	15년	1 주								
		덩쿨나무	5년	1 주								
		자두나무	5년	1 주								
		대추나무	3년	1 주								
2	25-3	상가	블록,조립식	264.9 ㎡	월명홈 마트	고석근	전북 군산시 월명동25-3	전세권	군산시 중앙로3가194 -3	최순단		
		채 양	천막	4.4 ㎡								
		콘크리트		0.5 ㎡								

군산시 공고 제2014-1718호

2015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 대관 공고

2015년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관시설

- 대공연장 : 1,200석, 소공연장 : 450석
- 제1전시실(251㎡), 제2전시실(132㎡), 제3전시실(132㎡), 연습실

2. 대관기간 : 2015. 1. 1 ~ 12. 31 기간 중 대관가능일(홈페이지 게시)

- 휴 관 일 : 신정(01.01), 설날연휴(01.18~20), 추석연휴(9.26~29), 매주 월요일
- 무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일(매주 월요일)

※ 동·하절기 시설물 점검기간

- 공연장 : 동절기(01.02~01.10), 하절기(08.01~08.10),
- 전시실 : 하절기(08.01~08.14)
- 동물이 출연하거나 버블공연은 전당사정상 대관불가 함

3. 신청 및 접수 : 2014. 12. 08 ~ 12. 12. (근무시간 09:00~18:00)**4. 접수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사무실 (방문접수만 가능)**

- 군산시 백토로 203번 (지곡동 286-8번지)

5. 제출서류

- 공 연 : 사용허가 신청서, 부대시설 사용계획, 허가조건, 공연계획서, 대관자 준수사항
- 전 시 :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조건, 전시계획서, 대관자 준수사항

6. 대관심의 : 2014. 12월중**7. 심의결과통보 : 2014. 12월중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454-5537)

2014. 11.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4 - 17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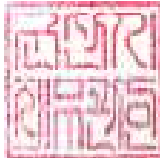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4. 12. 1.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4. 12. 1.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5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회계과	군산시 재무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군산시 분임재무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보건사업과	군산시보건소재무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군산시 보건소 분임재무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농촌지원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5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회계과	군산시 경리관인		인조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군산시분임경리관인		인조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보건사업과	군산시보건소경리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보건사업과	군산시보건소분임경리관인		흑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
농촌지원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경리관인		인조각	지방재정법 제67조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